#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실시 안내

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
## 1. 심화과정 실무수습 실시기간 및 실시법원

가. 실시기간

2026. 1. 5.(월) ~ 2026. 1. 16.(금) 2주

### 나. 실시법원

- 1) 서울고등법원(15), 수원고등법원(4), 대전고등법원(2), 광주고등법원(3)
- 2) 서울가정법원(2), 서울행정법원(5), 특허법원(6)
- 3) 서울중앙지방법원(7), 서울남부지방법원(3), 서울북부지방법원(4), 서울서부 지방법원(2)
- 4) 의정부지방법원(2), 수원지방법원(5), 청주지방법원(2), 대구지방법원(6), 부산지방법원(2), 울산지방법원(1), 창원지방법원(6), 광주지방법원(2), 전주지방법원(3),
- 5) 남양주지원(1), 평택지원(2), 안산지원(1), 강릉지원(1), 천안지원(2), 제 천지원(1), 대구서부지원(3), 통영지원(1)
- \*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의 편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재판부 수 등을 고려한 인원으로, 각급 법원의 희망재판부 수나 청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<u>대구고등</u>, 부산고등, 서울동부지법, 인천지법, 춘천지법, 대전지법, 제주지법, 고양지원, 부천지원, 성남지원, 안양지원, 여주지원, 원주지원, 속초지원, 영월지원, 홍성지원, 공주지원, 논산지원, 서산지원, 충주지원, 영동지원, 안동지원, 경주지원, 포항지원, 김천지원, 상주지원, 의성지원, 영덕지원, 부산동부지원, 부산서부지원,

<u>마산지원, 진주지원, 밀양지원, 거창지원, 목포지원, 장흥지원, 순천지원, 해남지원, 군산지원, 정읍지원, 남원지원</u>은 심화과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

### 다. 대상재판부

합의 또는 단독 본안재판부(단, 민사소액과 형사 약식명령 이의사건 전 담 재판부는 제외)

## 라. 참고사항

사법연수원이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심화과정 실무수습을 지원한 학생 들 중 실무수습생을 선발할 예정임

## 2. 심화과정 지원 자격 및 수습인원

가. 심화과정 지원 자격

- 1) <u>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(2025. 12. 이수예정자 포함)</u>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수습대상자로 추천된 자(**[별지 1]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심화과정 인원 상한표**의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)
- 2) 제16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수입상자는 [별지 2] 제16회 가인 법정변 론 경연대회 우수입상자 명단 기재와 같으며 <u>우수입상자</u>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
- 3) 다른 지원 자격 요건은 없음 (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이수 불요)

#### 나. 실무수습 인원

- 1) 수습인원 : 약 94명(실시대상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)
- 2)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
  -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
  -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법원이 수용 가능한 인

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원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

# 3. 지원 서류 \* 아래 가, 나, 다 항은 필수 제출 서류

가. 심화과정 지원서(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포함하여 **[별첨 1]**, **[별첨 2]**, **[별첨 3]** 서식에 따라 작성)

자기소개서에는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, 심화과정에 임하는 자세, 심화과정에서의 계획, 향후 진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

- 나.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의 추천서
  - 1) 실무수습생을 추천하는 교수는 추천 이유,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,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A4 용지 3장 이내로 변별력 있게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
  - 2) 실제 학생을 담당하였던 교수가 작성하되,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의 기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
- 다. 성적증명서(2025년 11월 현재까지 기 발급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의 성적증명서 일체. 예컨대 2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전체. 성적증명서에 석차의 기재가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차를 기재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)
- 라. 각종 대회 등의 활동(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, 특허소송변론경연, 대회 수상경력 등)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 능
- 마.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 견본(legal writing sample),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, 각종 법률 관련 경연대회에서 제출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제출 가능

## 4. 심화과정 지원서 작성 요령 [별첨 1]

- 가. 희망 수습법원 : 지원자는 위 심화과정 실시 법원을 참고하여 <u>수습을 희</u> 망하는 법원을 1, 2, 3순위로 기재하여야 함
- 나. 희망 수습재판부 : 지원자는 <u>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 중</u> 희망하는 재판 부를 '희망 수습법원 및 수습재판부' 항목의 희망 수습 법원명 다음에 '합의' 또는 '단독'으로 기재하여야 함(단,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 임)
- 다. 희망 전문분야 : 지원자는 다음 각 전문분야 중 수습을 희망하는 분야를 <u>3순위까지 기재</u>하여야 함(단, 다음의 구분은 편의에 따른 예시이고,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이며, 각급 법원에서 지도재판부와 실무수습생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임)
  - 1) 민사(일반 및 특별): 민사일반, 가사, 건설, 기업, 상사, 국제거래, 노동, 언론, 의료, 환경, 부동산(재개발등), 교통·산재, 지식재산권
  - 2) 형사(일반 및 특별): 형사일반, 부패, 외국인, 선거, 성폭력
  - 3) 행정 : 조세, 노동, 난민, 산재, 토지수용, 공정거래, 도시정비
  - 4) 특허(특허법원)

## 5.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

- 가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각 법 학전문대학원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할당된 실 무수습 상한 인원에 해당하는 실무수습생을 추천
- 나. <u>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[별지 1]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심화</u> 과정 인원 상한표의 인원 이하로 추천하여야 함
- 다. 각급 법원의 별도 면접절차 없이 사법연수원이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학생들 중 실무수습생을 선발할 예정임

- \* 각급 법원별 희망인원이 경합할 경우, <u>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</u> <u>학생은 우선하여 선발</u>하고, 특히 <u>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이</u> **있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배정**될 예정임
- 라.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심화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, 학교별 실무수 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, 실무수습 신청 철회기간 이후 무단 철회 여부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심화과정의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 원 책정 등에 반영할 수 있음

## 6. 심화과정 실무수습 내용

- 가. 통일적인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없음
- 나. 사법연수원에서는 최소한의 실무수습 항목만 제시하고, 구체적인 실무수 습 내용은 전적으로 <u>각 지도재판부</u>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
- 다. 실무수습이 시작되면 지도재판부는 곧바로 실무수습생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, 실무수습생의 의지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결정
- 라. 사법연수원에서 제시하는 실무수습 항목의 개요
  - 1) 고등법원
    - 1심 판결 분석보고서 작성(1심 재판에서의 당사자 주장 및 입증 상황,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정리, 나아가 1심 법원 판단의 당부에 대한 의견 초고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)
    - · 특정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(국내외 법리 및 판례 수집 정리)
  - 2) 지방법원 합의 및 단독재판부
    - 사건쟁점 정리보고서 작성(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주장, 증거관
      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)
    - 재판진행과 관련된 각종 결정문, 명령문 초고 작성(기록 검토를 바

탕으로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시 및 필요한 결정문, 명령문 초고 작성)

- 판결초고 작성[사건에 따라 법정심리 과정(구술변론, 증인신문 등)을 지켜보고, 재판장과 의견교환(합의) 후 판결 초고 작성]
- 마.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과 달리, 심화과정의 경우 <u>사법연수원에서 송출하</u> 는 강의는 없음

## 7. 심화과정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

- 가. <u>1개 재판부에 1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</u>으로 운영(다만, 지도재판부의 희망과 법원 사정 등에 따라 <u>합의재판부의 경우 2명의 실</u> 무수습생이 배정될 수도 있음)
- 나. 합의재판부의 경우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들도 지도 및 평가 업무 를 담당함
- 다.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수습생에 대한 법원의 평가결과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<u>평가결과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</u>할 예정임(단, <u>평</u> 가결과 확인을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서식을 실무수습생을 통하여 지도재판부에 제공하여야 함)

# 8. 유의사항 \*각 기한 엄수 요망

- 가. <u>심화과정 지원자는 2025. 11. 12.(수)까지</u> 반드시 <u>소속 법학전문대학원</u> <u>에 지원 서류를 접수</u>하여야 합니다.
- 나. ① <u>각 법학전문대학원</u>에서는 <u>2025. 11. 13.(목)까지</u> **[별첨 4]**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심화과정 지원자 명단을 지원 서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수입상자의 경우 [별첨 4] 서식

말미에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되, '순번'란에 '가인', '특허'로 구분 하여 함(**[별첨 4]** 서식의 "예시"참조)

- ② 사진 파일 실무수습생 신분증을 사전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.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일괄 취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연수과 김재연주무관(kk5636@scourt.go.kr)로 일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<u>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</u>에서는 <u>2025. 11. 19.(수)까지</u> 각 법학전문대학원 의 심화과정 지원 서류 및 지원자 명단을 취합·정리하셔서 사법연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사법연수원에서는 <u>2025. 12. 중순경</u> 최종 선발된 실무수습생 명단과 법원 배정내역 및 실무수습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
- 마. 그 밖에 심화과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법연수원 연수과 김재연 주무관(031-920-3457) 또는 법실무교육교수실 박상렬 교수 (031-920-3153)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. 끝.

[별지 1] **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심화과정 인원 상한표** 

귀여		대하요			총 정원	대학원별 배정인원
권 역	대 학 원 명				ㅇ ㅇ년	(약 5%)
서울 권역 (15개교)	서	울		대	150	6
	고	려		대	120	6
	성	균	관	대	120	6
	연	세		대	120	6
	0	화	여	대	100	5
	한	양		대	100	5
	경	희		대	60	3
	서	울 시	립	대	50	2
	아	주		대	50	2
	인	하		대	50	2
	중	앙		대	50	2
	한	국	외	대	50	2
	강	원		대	40	2
	건	국		대	40	2
	서	강		대	40	2
		계			1,140	53
대전	충	남		대	100	5
권역	충	북		대	70	3
(2개교)		계			170	8
대구 권역	경	북		대	120	6
	영	남		대	70	3
(2개교)		계			190	9
부산 권역	부	산		대	120	5
	동	아		대	80	4
(2개교)		계			200	9
	전	남		대	120	6
광주	전	북		대	80	4
권역	원	광		대	60	3
(4개교)	제	주		대	40	2
		계			300	15
합계		25개.	ıl.		2,000	수용가능인원 94명